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1925)를 통해서 본 혼례문화와 현재적 함의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서문'(序文)과 '원서'(元書) 분석
- III. 혼례의 조례와 예식절차 분석
- IV. 나가는 말: 현재적 함의

[초록]

이 연구에서는 1924년과 1925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간행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한국교회에서 행했던 혼례문화를 고찰했다.

첫째, 이 혼례예식서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창조 사역, 엄격한 일부일처제 결혼, 아담의 원죄, 이로 인해 야기된 죽음의 징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심과 부활, 구원과 미래적 소망에 관한 신실한 언약을 강조했다.

둘째, 혼례예식에 규정된 조례에서 예식은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성경적 기독교예식에 준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 혼례예식서에서는 복장에 관한 사안을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수용함으로써 혼례식에 실용적 편의를 도모했다.

셋째, 혼례예식에서 착용해야 할 복장에 관한 규례는 토착화차원에서 한국인의 내면적인 심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전례(傳禮) 예복도 허용함으로써 매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예법을 반영하고자 했다.

넷째, 혼례예식 순서절차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개식(신랑신부 입장), 찬송(혼례), 기도, 식사, 성경낭독, 설명(설교와 문사의 내용), 서약, 신물(信物)증여, 기도와 광고, 광고, 찬송(송영과 예배), 축복(축도), 증서교환 및 폐식 등 모두 13단계로 편성되었다.

다섯째, 『長老教會婚喪禮式書』가 제시한 교훈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기독교 결혼예식에 있어 성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서류들과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내빈들을 향한 신중한 문사(問辭), 신랑신부가 반복적으로 서약하는 절차, 결혼증서 교환 등 술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키워드: 『長老教會婚喪禮式書』, 혼인예식, 신랑과 신부, 혼인증서, 한국장로교, 『예배모범』

논문투고일 2020.07.18. / 심사완료일 2020.08.27. / 게재확정일 2020.09.03.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1924년과 1925년에 연속 발행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Forms of Marriage and Burial*)¹를 분석하여 혼인예식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헌은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 최초로 인준을 받아 혼례와 상례 예식이 갖는 의의와 절차 등을 공지함으로써 기독교 신자들이 비성경적인 관례들을 혁파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성 있는 예식을 준수하게 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픔이 있었지만,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실각한 후에 쇄국정책을 철회하고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서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화정책을 수행했다.² 기독교가 전래되고 근대화가 추진되던 과정에서, 특별히 19세기 말엽부터 해방 이전까지 반세기 이상 체험한 과도기적 근대화는 각성과 혼란이 혼재된 이중적 지평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그번(William F. Ogburn)이 1922년에 발표한 『사회변동』(*Social Change*)³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간파했던 문화지체이론(cultural lag)에 제시되어 있다. 물질문명의 영역은 발 빠른 근대화를 추구하지만 정신영역인 문화는 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해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과 문화의 간극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는다는 논리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급속한 서구문명 유입과 아울러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혼례에 있어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유형에 직면했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행해진 혼례예식은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기독교식, 사회식(유교식), 불교식, 가톨릭식, 천도교식, 라마교식 등이 있었고 이중 사회식과 기독교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⁴

1 朝鮮예수교長老會,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 朝鮮예수교長老會, 『長老教會婚喪禮式書』(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5). 1924년판은 서지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 이하 각주에서는 1924년판은 『長老教會婚喪禮式書』로, 1925년판은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5)로 표기한다.

2 박영규, 『朝鮮王朝實錄』(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496-97.

3 William Fielding Ogburn,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New York: Viking Press, 1950).

4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아시아문화연구』 제28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이 베푸는 가르침에 순응하여 유교문화가 아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혼례예식으로 대체해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권면을 존중하면서도 토착화(indigenization)라는 심성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던 터라 결코 봉건적인 전례와 인습, 그리고 500년 이상을 답습해 온 유교적 관행과 민속을 쉽사리 일소할 수는 없었다. 즉 신앙과 전통 사이의 틈바구니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가령, 유교식 전통혼례로서 신랑신부가 대면하는 상견례, 신랑이 신부를 맞는 교배례(交拜禮),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천지례(天地禮), 서약을 받아들이는 배우례(配偶禮), 신랑과 신부가 청실홍실로 묶은 표주박 술을 마시고 하나가 된다는 근배례(罇拜禮), 기타 사당 참례 등이 있으며⁵ 이 외에도 혼한 민간풍속으로 무속인을 찾아 공합을 보는 일, 길일(吉日) 선택, 다산(多産)의 민간신앙이 담긴 폐백(幣帛) 등이 있다.⁶ 기독교 혼인예식에서 일부 유교식 현상들이 암암리에 개입된 점에 대해 흔히 토착화 현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배척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갖는 불가피한 대처였던 것으로 에두른다. 그러나 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선교신학자 헤들러트(Roger E. Hedlund)가 주장한 것처럼 선교 활동에서 가장 우려되는 고질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성경적인 내용들까지도 용인하여 동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종교적 혼합주의(religious syncretism) 양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⁷ 1920년대 중반만 해도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나도록 통일된 예식서를 갖추지 못해 각 지교회들은 대략 통용되던 관행들을 참고하여 목회자가 자율적으로 집례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1924년에 발행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크다.

기독교 전래 초기부터 해방 전까지 한국사회에 기독교윤리가 뿌리를 내리고 신자들에게 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스왈론(William L. Swallen)이 간행

(2012), 179.

5 임혜경 외 2인, 『매너와 서비스』(서울: 새로운사람들, 2003), 114.

6 cf. 이길표, 『전통가례』(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45-47.

7 cf. Roger E.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A Biblical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1), 39-42.

한 『도덕학』(1915), 스토키(James Stalker)의 『그리스도 윤리표준』(1929)과 『그리스도 모범』(1929), 『耶蘇의 社會訓』(1930), 한치진의 『基督敎人生觀』(1934), 솔타우(Theodore S. Soltau)의 『신자생활의 첩경』(1936) 등이 보급되어 윤리교재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음담패설의 악덕 일소, 금주금연, 축첩금지, 노비 해방, 반상 구분 폐지,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혁파, 노름 및 기방출입 엄금, 마약 퇴치 등”⁹ 과감하게 현실적인 문제에 도전하여 윤리실천을 솔선했다. 그런데 반드시 주목할 사안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기독교윤리와 관련된 저서나 번역서에는 다채로운 이슈들을 소개하여 개인윤리, 가정윤리, 사회참여와 윤리, 국가윤리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담론을 전개했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혼례 혹은 장례 문화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식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가 탐구한 바에 의하면, 혼례와 관련된 유익한 교훈을 준 목회자로서 평양 장대현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들 수 있다. 일례로서, 그는 “結婚時 一, 未成者는 不可(조혼 금지-연구자 주). 마十九0五-二, 不信者와는 不可. 高呼六0十四-十八- 三, 財로 婚姻함이 不可 四, 父母만 主掌함이 不可 五, 當者만 主掌함이 不可(자녀의 의지 반영-연구자 주) 六, 媒者가 主掌함이 不可 七, 喪配後에 急速結婚함이 不可 八, 擇婚時에 德心으로 他人을 도아주기 爲호야 할 거시오 自己 慾望만 爲호야 함이 不可”¹⁰라고 하여 결혼의 도리를 논함에 있어 미성년자의 조혼,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 재물축적을 의도한 결혼, 부모와 자식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결혼, 배우자를 잃은 후 급속한 재혼 등을 유의할 점들로 꼽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혼례예식에 관한

8 William L. Swallen, 『도덕학』(조선예수교장로회, 1915); James Stalker, 『그리스도윤리표준』, 김필수, 오천영, 윌리엄 클락 역(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9); James Stalker, 『그리스도모범』, 김필수, 오천영, 윌리엄 역(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9); W. Rauschenbusch, 『耶蘇의 社會訓』, 고영환 역(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0); 한치진, 『基督敎人生觀』(京城: 철학연구사, 1934); Theodore S. Soltau, 『신자생활의 첩경』(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6). 한국에 기독교윤리가 정착된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볼 것. 이장형,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정 탐』(성남: 북코리아, 2016), 120-208.

9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2019), 156.

10 길선주, 『講臺寶鑑』(平壤: 東明書館, 1926), 127. 설교제목: “夫婦의 道”.

조례와 절차 모두를 체계성 있게 갖춘 문헌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해방 전에 혼상례 예식의 조례와 집례절차 등을 소상하게 담은 탁월한 자료로서 『長老教會婚喪禮式書』가 독보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문헌은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1924년에 보급되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장로교 총회에서 인준하여 발행한 표준예식서라는 점에서, 혼례예식의 조례와 절차 등을 상술한 첫 지침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교단 총회의 권위에 의해 선포된 공문의 성격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오늘날의 기독교 결혼예식을 다룬 주목할 만한 논문들로서 결혼 만족도를 고찰한 박태영의 “기독교인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4), 언약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윤리를 분석한 강인한의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2005), 결혼의 교육적 의의에 주안점을 둔 손삼권의 “현대 사회의 결혼관 경향과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개발”(2008)과 이정관의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2015), 결혼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담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윤선의 “결혼 준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연구”(2008),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 초점을 둔 조용훈의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2011) 등이 있다.¹¹ 이 논문들은 주로 실천적 논점들을 부각시켜 결혼예식의 원리와 의의, 만족도, 윤리, 교육, 상담 등을 논했으며 현재 시점에서 적용이 가능한 담론을 전개했다. 한편,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전래초기부터의 혼인예식을 다룬 연구로는 한규무의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1999)이 있고, 일반역사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영수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2012)

11 박태영, “기독교인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제12권(2004), 77-109;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념논문집』 제30권 1호(2005), 219-45; 손삼권, “현대 사회의 결혼관 경향과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제19권(2008), 221-47; 오윤선, “결혼 준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연구”,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194-221; 조용훈,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22권(2011), 303-30; 이정관,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 『신학과 실천』 제47권(2015), 401-26.

이 있다.¹² 이 두 편의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틀에서 개화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통시적(通時的)으로 연대를 구분하여 결혼문화에 대한 동향을 다루었으며 주관적 역사로서의 게시히테(Geschichte)보다는 주로 객관적 역사로서의 히스토리에(Historie) 차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한국기독교의 고전 혼례 예식서로서 최초의 문헌인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자료는 오늘날 자유분방한 기독교청년들에게 기독교신앙과 복음에서 멀어진 결혼예식을 다시금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게시히테로서의 시의성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요즘 기독교의 결혼예식 동향을 보면 예식을 거행할 때 예배모범에 제시된 식순에 따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신자와 불신자 간 결혼이 성행하는데다 예식 단상에 주례목사조차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며, 세속적 축제방식이 어우러진 예식으로 경도되어가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1924년과 1925년에 장로교 총회 차원에서 인준하여 보급했던 『長老教會婚喪禮式書』를 분석함으로써 서문과 원문, 혼례조례, 혼례절차, 혼례복식 등 그 당시 장로교에서 제정한 혼례문화를 고찰하고 이 예식서가 갖는 현재적 함의를 성찰하여 한국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결혼예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서문’(序文)과 ‘원서’(元書) 분석

1. 서지정보

『長老教會婚喪禮式書』는 1924년과 1925년에 연속 간행되었다. 장로교 총회에서는 1924년판에 이어 이듬해 보완하여 1925년판을 발행했지만 혼례예식의

12 한규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0권 (1999), 67-101;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151-84.

경우 개정된 내용은 없으며 ‘서문’(序文) 앞에 예식위원 박문찬 목사의 ‘원서’(元書)만 추가되어 있다. 장로교 총회에서 공인한 예식서라는 점을 보증하기 위한 의도로 1924년판과 1925년판 ‘서문’에 “우리 總會에서 禮式委員을 選舉하야 婚喪禮式의 通例를 (중략) 通過하고 이에 刊行하노니”라는 문구를 넣었고, 1925년판에는 목차 앞에 영문으로 발행정보와 아울러 “The following was decided by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1924년판에는 없음)라는 문장을 표기했다. 당시 보편적인 편집관례에 준하여 겉표지, 영문 내지(內紙), 목차, 혼례예식서(제1장), 상례예식서(제2장), 부록(혼상례 조례, 성례와 장립식), 발행 서지정보 등의 순서로 엮였으며 한자의 경우 작은 글자체의 한글을 우측에 병기하여 한단 내려쓰기 체제로 인쇄되었다. 1924년판에서는 문헌정보를 발견할 수 없고, 1925년판 책 뒷부분에 첨부된 서지정보에 의하면 발행인은 군병빈, 교열위원은 양전백과 차상진, 인쇄자는 정경덕이다. 발행 및 발매소(發賣所)는 경성(서울) 소재 ‘朝鮮基督教彰文社’이고, 발행일자는 1925년 2월 25일, 책 가격은 정가 80전으로 책정되었다.

한국기독교에 하나의 일치된 혼상례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조성되자 장로교 총회에서는 박문찬 목사와 박승봉 목사 등 예식위원들을 선거로 선출 임명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조치했으며 예식서 출판을 장로교 총회의 권위로 선포했다. 실제 연구 기간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문헌 앞부분에 편집된 ‘원서’는 박문찬이 1924년 9월 상한(上澣, 상순)에, ‘서문’은 박승봉이 한 달 후인 동년 10월 상완(上浣, 상순)에 작성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보다 몇 달 전부터 착수했을 것으로 본다.

2. ‘서문’에 기술된 문헌 발행의 취지

박승봉 목사가 작성한 ‘서문’¹³은 1924년판과 1925년판 앞부분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고 『長老教會婚喪禮式書』를 연구하여 집필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 서문에서 “婚喪의 禮는 人生의 가장 重大한 儀節이니 可히 忽諸치 못하리로다”라고 하여 혼인예식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

13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2(박승봉의 ‘序文’).

한 의례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이 예식서를 통해 기독교 예식이 범사에 성결하여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관례로 정착되기를 원했고, 예식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각별히 “聖經의 眞理를 標準 ㅎ야” 성경에 합치하는 예식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통일성을 갖춘 혼상례 예법을 완정(完定)하여 통용한 사례가 없어 애로점이 많았지만 1924년도에 이르러 장로교 총회에서 예식서 작성위원들을 선출하여 연구에 임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공인된 예식서를 출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예법을 마련했다는 점을 자부했다.

3. ‘원서’에 기술된 혼상례의 중요성

박문찬 목사가 작성한 ‘원서’¹⁴는 1924년판에는 없고 1925년판에만 게재되어 있다. 그는 이 원서를 통해 표준이 될 만한 혼상례 예식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 예식서를 간행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는 “總會任命을 受 ㅎ야 將此 二禮(혼례와 상례-연구자 주) ㅎ야 於舊式 中에 大略 改正 ㅎ야” 총회로부터 허락을 얻어 출판한다고 천명했다. 그가 밝힌 혼례와 상례의 중요성은 복음적 취지에서 네 단계를 거쳐 진술되었으며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관철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다.

첫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창조사역과 더불어 ‘一男一女’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술함으로써 유교전통에서 수립한 일부다처제의 병폐를 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一男一女로 使之生育”하게 하셨고, 후손의 번성과 윤리의 근간을 세우셨으며,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주장하신다고 했다.

둘째 단계로서,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세계에 초래된 죽음의 형벌을 설명했다.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을 자초함으로써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단계로서, 인간의 범죄와 형벌을 논한 데 이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점을 피력했다.

14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5), 1-2(박문찬의 ‘元書’).

넷째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부활과 구원(復活得救)을 바라보며 장래의 소망(將有所望)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원서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 예식서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인간창조-타락-구원-영생소망>이라는 논리적 서정을 갖추어 복음을 인프라로 설정함으로써 성경적 결혼윤리의 기초를 체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지고의 모토를 구현하려는 데 목적을 둔 문헌이다.

III. 혼례의 조례와 예식절차 분석

본 장에서는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을 중심으로 혼례의 조례(條例)와 복장, 혼례의 절차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예식서가 출판되던 당시 예배모범은 1922년에 발행된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 편성되어 있었다. 이 헌법서의 예배모범 제12장에는 “婚禮”라는 별도의 주제 하에 총 8개 항목으로 제정된 조례들이 기술되어 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1924년판과 1925년판 부록편에는 “婚禮條例”라는 명칭으로 예배모범 제12장 전문을 첨부함으로써 식장에서의 예식절차와 대조해가며 참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본 연구자는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기술된 혼례예식을 분석함에 있어 이 예배모범 조례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부연할 것이며 각주로 처리할 때 출처 표기는 1922년판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의 면수에 준할 것이다.

1. 혼례의 조례와 복장

(1) 혼례의 조례

혼례조례는 모두 8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식을 거행하기 전부터 예식 종료 이후의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부준칙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했다. 이 준칙들은 현재 고신, 합동, 통합, 합정, 합신, 합동개혁, 기장 등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례조례의 근간이 되고 있다.¹⁵

1922년도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의 혼례조례에 기술된 주제와 대요(大要)를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1922)의 혼례조례 규정¹⁶

항목	주제	대요
제1항	성례가 아님 (보편적 성격)	혼례는 성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보편적 규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가톨릭의 혼배성사와 구별함
제2항	집례자의 자격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할 것과 목사나 교역자가 집례함
제3항	일부일처제	일남일녀(-男一女)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며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척간의 혼인을 금지함
제4항	혼인 적령기	조혼을 금지하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의 승낙을 얻어 주례자에게 고함
제5항	혼인의 강제성문제	부모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을 강제로 정할 수 없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시켜서도 안 됨
제6항	법 저촉 여부	혼례는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정의 화평을 주장해야 함
제7항	증인 동반 및 혼인증서 교부	혼례는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거행해야 하며 혼인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주일을 피하여 거행할 것
제8항	혼인명부	주례목사는 교회에 별도로 혼인명부를 비치하여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추후 증거로 삼아야 함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는 혼례절차를 다루기에 앞서 혼례조례를 기술했

15 장로교단들의 혼례조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출판국, 2018), 402-03(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2), 257-58(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48-49(통합); 김재갑 편,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251-52(합정); 총회헌법위원회 편,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289-90(합동개혁);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편, 『헌법』(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1), 146-47(기장).

16 Charles A. Clark 편,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222-25. 이 표는 본 연구자가 항목별로 대요를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이하 각주에서는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으로 표기한다.

는데 예배모범에 수록된 8개 항목 전체를 소개하지 않고 통폐합하거나 가장 중요한 사안들만을 간추려 5개 항목의 축소판 형식으로 명기했다. 핵심적인 항목들로서 제3항의 일부일체제, 제4항의 혼인 연령, 제5항의 혼인의 강제성 문제, 제7항의 혼인증서 교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상으로는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실 정하시는 부부일체의 도리를 지켜야 하고, 남녀 이성(二姓)이 결혼할 것이요, 주혼자(主婚者)가 강제로 결혼을 성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민간 풍속에 따라 무당을 찾아 주당(周堂, 꺼리는 귀신)을 점치거나 길(吉)한 날을 선택하는 등 무속신앙을 일소할 것을 경계하고, 일자는 가능하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피하여 좋은 계절로 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신랑신부 양가의 민적등본(民籍謄本, 현재의 호적등본에 해당함)이나 당회보증서를 통해 혼인에 하자가 없는 순결한 신분임을 보증해야 하고 혼인증서를 교부하되 주혼자, 행례자(行禮者), 주례자 모두가 혼인증서에 일괄적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婚姻은 人倫大事이요 天定配匹이라 故로 信者는 맛당히 聖經에 敎訓¹⁷ 夫婦一體의 奧義(매우 깊은 뜻-연구자 주)를 深悉¹⁸ 하야 信德이 相齊(서로 가지런 함-연구자 주) 하고 年紀가 卽長한 者(혼인 연령에 이른 자-연구자 주)로 成婚케 하되 (중략) 二姓이 合¹⁹ 하야 一與之成親而夫婦(결혼하여 부부가 됨-연구자 주)면 終身 不改²⁰ 하느니 以故로 主婚者는 (중략) 強制로 作婚치 못할 일이니라. 吉日을 擇²¹ 하고 周堂을 占²² 하느니 迷信의 蔽俗은 切棄(끊어서 버림-연구자 주)할 것이요 但 隆冬盛暑에 行禮²³ 하기는 多艱(어려움이 많음-연구자 주)할지니 (중략) 이 穢를 避²⁴ 하야 成禮²⁵ 하는 것이 妥當²⁶ 하니라. (중략) 主禮할 者가 반다시 新婚人(신랑신부-연구자 주)의 兩方 民籍藤本이나 又는 該 堂會保證書를 接受調查²⁷ 하야 確實 無疑然 後에(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연구자 주) 禮式執行²⁸ 하기를 許할지니라. (중략) 婚姻證書는 行禮²⁹ 하는 當日에 鄭重이 手續케 하되 主婚者와 行禮者와 主禮者가 各其 署名 捺印³⁰ 하야 新郎新婦가 各자 一通 式 保管³¹ 하야 永久히 確實³² 한 證明이 되게 할지니라.¹⁷

17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3.

위의 인용문에 기술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명기된 조례내용들 가운데 꺼리는 귀신을 점치는 일과 길일 선택을 금지하여 민간 무속신앙을 경계한 점, 가급적 좋은 계절로 예식일자를 결정할 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양 가문이 민적등본 혹은 당회보증서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혼인증서에 ‘주혼자, 행례자, 주례자’가 일괄 서명할 것을 성문화한 규정 등은 종래의 예배모범에는 상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다. 이 사안들은 박승봉, 박문찬 등 예식위원들이 일정기간 종래의 혼인예식을 검토하여 연구과정을 거침으로써 미진하다고 판단한 점들을 실용성 있게 손질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 예식서에 5개 항목으로 간추린 조례들은 이전의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에 마련한 예배모범에 비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첫째, 각별히 기독교인들도 대수롭지 않게 일상적으로 범할 수 있는 태일이나 주당을 점치는 미신적인 인습들을 일소할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민간에 뿌리내려진 비기독교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한층 기독교 신앙을 증시하여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둘째, 민적등본이나 당회보증서를 접수받아 신분을 확인하게 하고 혼인증서에 주혼자, 행례자, 주례자가 모두 서명하게 함으로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인의 적법성을 담았다. 이는 예식을 집행하는 주례목사와 교회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인륜지대사에 대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지나치게 춥거나 무더운 혹한혹서(酷寒酷暑)의 계절을 피하여 혼례일자를 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좋은 일기에 예식을 은혜롭게 치르게 하고 양가와 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2) 혼례의 복장

혼례예식에서의 복장문제는 쉽게 통일할 수 없는 혼잡한 상황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집안의 형편과 가세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예복을 무리하게 장만하지 않고 “事實上 形便과 處地에 依호야 (중략) 其 處地대로 該 地方 常用禮服을 服用함이 亦 無妨호니라”¹⁸라고 하여 상황에 맞추어 편리한대로

마련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형편이 된다면 당시 세계 통용복장으로 신랑은 예복차림의 높은 모자인 고모(高帽)와 후록고투(frock coat, 厚錄高套)를, 여자는 면사(面紗)와 화관(花冠), 반양제복(半洋制服)을 착용할 것을 권했다. 이러한 복장은 1917년 「基督申報」 보도에 의하면 당대에도 점진적으로 통용되어가던 혼례문화였고 신식혼례에 옛 정신을 취한 의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다.¹⁹

京鄕邑村이 禮服을 一致하게 實行키는 眞實노 困難할지라. 故로 社會의 制服이나 國定한 禮服이 頒行(‘반포’를 의미함-연구자 주)케 되기 前에는 아직 便宜되로 服用키를 聽許할바게 업스나 現下에 가장 適當한 것(가장 권장하는 방안임-연구자 주)을 論及컨디 世界 通用禮服을 使用하는 것이니 즉 男子는 高帽에 후록고투며 女子는 面紗花冠에 半洋制服이라.²⁰

참고로, 형편과 처지를 배려하고자 하는 지침은 장례예식에도 적용되었다. “信者가 居喪에 禮服制度는 國定制가 되기 前은 到底히 一致케 하기 不能하나 亦是 複雜 各異한 것도 不可하니 엇더하던지 現行 通用制度에 適中을 取히야 通規로 定하는 것이 合當하니 (중략) 各其 地方 形便되로”²¹라고 하여 조선의 전통 예복을 갖추든지 아니면 서양복장을 수용하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혼례식이든 장례식이든 외적 차림새와 복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아디아포라(ἀδιαφορα)의 입장을 취했으며 혼례식의 경우 인륜지대사로서의 예식 자체가 갖는 내적 의미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2. 혼례의 절차 및 현재 장로교 교단들의 혼례절차와의 비교

(1)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절차(예식순서)

18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3-14.

19 “宗教와 禮儀”, 『基督申報』, 1917년 6월 27일.

20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4. ‘후록고투’란 ‘frock coat’를 음역한 것이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일반 남성이 착용한 긴 상의와 줄무늬가 있는 바지의 한 벌을 가리킨다.

21 『長老教會婚喪禮式書』, 23.

혼례의 절차는 개식(開式)으로부터 혼인증서 교환과 폐식(閉式)에 이르기까지 모두 13단계로 번호를 매겨 명문화했으며 매 순서마다 준수해야 할 지침을 기술했다.²²

① 개식

주례자가 식장의 정면에 서고, 하객들은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 일제히 기립하여 축하의 예를 갖춘다. 신랑은 주례자의 우편에, 신부는 주례자의 좌편에 서게 하며 내빈은 착석하여 정숙한 자세로 주례자의 말씀을 경청하여 경의를 표한다.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의 예배모범에서는 주례자를 장립 받은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규정하고 있지만²³ 이 혼례예식서에서는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와 조사(助師)²⁴까지로 확대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② 찬송

혼례식 찬송 중 256장(혹은 257장)으로 제시했는데 “讚頌有無는 亦 主禮者의 任意”라고 부연하여 주례자 임의로 부르거나 생략할 수도 있으며 자율적으로 선곡할 수 있도록 했다. 1925년에 발행된 찬송가는 『찬송가』 제4판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1924년에도 이 동일한 찬송집이 통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찬송가』에는 253장부터 266장까지 총 14곡이 혼인예식 때 부를 수 있도록 따로 분류되어 있다.²⁵

③ 기도

기도자는 두서없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당일의 혼인과 관련하여 성친(成親), 즉 혼인의 가약(嘉約)에 관한 내용으로 간구해야 한다.

④ 식사(式辭)

식은 주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가와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의 가약을 거행하는 일임을 상기시키고 예식을 양가와 내빈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22 『長老教會婚喪禮式書』, 3-13.

23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3.

24 조사 칭호는 1920년대를 지나면서 차츰 ‘助事’에서 ‘助師’로 표기가 바뀌었다. cf. 김병희, “초기 한국 장로교 대구경북지방 조사의 역할과 활동”, 『역사신학논총』 제36권(2020), 179-80.

25 Alexander Albert Pieters, 『찬송가』(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5), 1(‘문예목록’).

⑤ 성경낭독

혼인예식에 가장 적합한 본문으로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 혹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제시했다. 마태복음 본문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내용으로 평생 부부의 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한 내용이다. 에베소서 본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구절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가르침이 핵심을 이룬다. 청교도 신학자 헨리(Matthew Henry)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구절에 대해 자녀는 자신의 분신(分身)이지만 아내는 이보다 훨씬 가까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²⁶ 박윤선은 부부의 도덕, 곧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연합하는 진리를 가르치며 일부일처제는 창조질서에 뿌리를 둔다고 했다.²⁷ 칼빈(John Calvin)은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는 부부생활의 결합이 오직 두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며 일부다처제는 하나님의 의지와 괴리된 제도라고 확언했다.²⁸ 그는, 에베소서 5장 22절의 순종에 관한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고유한 질서이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도 순종할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25절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깊이로써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교훈한다고 했다.²⁹ 이처럼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한 말씀으로서 종신 일부일처로 이루어지는 화목한 가정과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한 두 본문으로 채택

26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269. 마19:6 주석.

27 박윤선,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서울: 영음사, 1974), 99. 창2:24 주석.

28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enesis(I)*, trans. John King(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136. 창2:24 주석.

29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205. 엡5:22, 25 주석.

하여 제시했다.

⑥ 설명(說明)

이 순서는 ‘설명’으로 명명되어 있고 설교 혹은 문사(問辭)라는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 두 가지의 사안을 담고 있다.

첫째, 설교(주례사)를 통해 혼례의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혼인은 인류의 가장 귀중한 일이고, 일부일처로 부부의 연을 맺어 후사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 거행해야 하는 예식임을 강조한다.

둘째, 문사의 내용으로서 “只今 이 두 사람이 거룩히 結婚式을 行하라는 썩이 니 萬一 뒤시던지 이 成親에 對하야 公言하실 事由가 있거던 現場에서 말삼하 시고 日後에는 異論이 업슬 것이라 하느이다.”³⁰라고 선포하여 양가와 내빈들로 하여금 정당한 혼사임을 공증하게 했다. 이 문사는 예배모범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박문찬, 박승봉 등 위원들이 예식에 하자가 없도록 별도로 검증절차로 삽입한 것이다. 이는 예배모범 혼인조례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牧師들은 이 일에 衞히 注意하야 하느님의 法을 犯함이 업도록 하고 또한 國家의 法律에 抵觸함이 업도록 하며 家庭의 和平과 安慰를 損傷치 안도록 (중략) 이 婚姻에 對하야 反對되는 일이 업는 것을 證明할지니라.”³¹라는 지침을 예식순서에 넣어 구체화한 것이다.

⑦ 서약

설교와 문사를 마친 후에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와의 문답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서약하게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신랑과 신부에게 한 차례씩 서약하게 하여 도합 두 차례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이 예식서에는 무려 다섯 단계에 걸친 질의응답 과정을 마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제1단계로서, 주례자는 신랑신부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 억지로 결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한다. 또한 피차 밝혀야 할 일이 있으면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현장에서 숨김없이

30 『長老教會婚喪禮式書』, 6.

31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224.

이실직고하게 함으로써 이 혼사로 인해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명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예배모범 혼례조례 제5항 “父母는 너희의 子女로 하여금 너희의 願치 아니하는 것을 強制로 婚姻하지 못할지며”³²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차원에서 원문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살을 붙여 보완했다.

제2단계로서, 신랑에게 신부를 아내로 맞을 것을 원하는지, 평생 부부로서 화락하며 살 것인지, 종신 동실(同室)하기로 하나님 앞과 양가 및 내빈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제3단계로서, 신부에게 신랑을 남편으로 맞을 것을 원하는지, 평생 화락하여 살 것인지, 종신 해로하기로 하나님 앞과 양가 및 내빈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제4단계로서, 주례자는 신랑에게 다시 서약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주례자는 제2단계와는 달리 “新郎 某君(姓名)이여 그딤의 안희(그대의 아내-연구자 주)된 新婦 某氏(姓名)를 今日브터...”와 같은 방식으로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여 질문하고 신랑에게 답변을 듣는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근거하여 신랑에게 평생 신부를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돕고 위로하며, 고락(苦樂)간에 비교하지 않고,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인지를 질문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양가 및 내빈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제5단계로서, 역시 신부에게도 다시 서약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주례자는 제3단계와는 달리 역시 “新婦 某氏(姓名)여 그딤의 家君된 新郎 某君(姓名)을 今日브터...”와 같은 방식으로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불러 질문하고 신부에게 답변을 듣는다. 신랑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기며, 돕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비교하지 않고,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양가 및 내빈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한 가지, 신랑의 경우에 비해 추가된 내용으로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의 가르침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했다.

⑧ 신물(信物)증여

신물은 부부로 해로한다는 믿음의 증표이지만 오늘날 예식에서는 비중 있게

32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223-24.

다루지 않고 증여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예식서에서는 신물증여를 중시하여 의미 있게 집행할 것을 교훈했다. 신물은 지환(指環, 반지) 혹은 다른 패물도 가능하다. 신랑신부가 신물을 주례자에게 주면 주례자는 다시 신랑과 신부에게 되돌려 주며, 이어서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증여함으로써 <신랑&신부→주례자→신랑→신부; 주례자→신부→신랑>이라는 다섯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이는 주례자가 혼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이 혼사를 보증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신물이 지환이면 왼손 무명지(無名指)에 끼우게 하여 약지가 갖는 상징성을 고무했다. 9세기경부터 기독교 혼인예식에서 반지를 신부의 약지에 끼워주는 예법이 생겼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약지에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³³ 또한 무명지는 언약을 체결한다는 약지(約指)로서의 의미가 있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일생의 반려자가 되기 위해 혼인식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손가락이다.³⁴ 이런 점에서 약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생명과 언약이라는 이중적 상징성이 있으며 이 의미를 담아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⑨ 기도와 공고(公告)

서약과 신물증여를 마친 후에 주례자는 신랑신부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로 성혼을 선포한다. 공고는 요즘의 성혼선언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新郎 某君(姓名)과 新婦 某氏(姓名)가 지금부터 夫婦된 誓約을 하느님과 및 여러 證據는 사람들 앞에서 分明히 言告한지라 그런故로 내가 聖父와 聖子와 聖神의 일흠(이름-연구자 주)을 받드려 이 두 사람이 夫婦됨을 公告하노니 하느님께서 配合하야 주신 것은 決코 사람이 分離치 못할 것이라. 아멘.”³⁵

⑩ 광고, 축전(祝電), 축전(祝箋) 및 타사(他事)

혼례를 마무리하기 전에 양가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필요한 광고나 축전, 여타의 부수적인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33 김영기 편, 『역사 속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서울: 북코리아, 2005), 659.

34 이덕수 외 4인, 『경락미용과 한방』(서울: 광문각, 2005), 79.

35 『長老教會婚禮式書』, 12-13.

⑪ 찬송

1장 혹은 3장을 제시했는데 당시 불리던 『찬송가』에 의하면 1장부터 40장까지는 ‘찬송 hymn 과 레비 hymn’ 분야로 편성되어 오늘날의 ‘송영’(頌榮)과 ‘예배’에 관련된 찬송들이 배정되어 있다. 『찬송가』의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3장은 ‘이 텃디간 만물들아’이다.³⁶ 이는 예식을 마감하면서 예식을 순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순서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찬송가는 ‘감사, 찬송, 기도, 찬양’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안이며³⁷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고백한다.³⁸ 바로 이 의미를 충실하게 갖추기 위해 마지막 찬송은 은총에 감사하는 고백적 의미를 담아 송영과 예배에 관련된 곡들 중에서 선곡했던 것으로 보인다.

⑫ 축복

신랑신부와 양가, 내빈들 모두를 위해 축복하는 단계이며 주례목사가 축도한다.

⑬ 증서교환 및 폐식

이 최종단계에서는 신랑신부를 나란히 서게 하고 주혼자, 행례자, 주례자가 일괄 서명날인한 혼인증서를 신랑과 신부 각자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 평생 보관하게 한다.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의 예배모범에는 혼인증서를 주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지만 이 예식서에서는 주혼자, 행례자, 주례자 삼자가 공동 서명날인할 것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혼인예식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2) 오늘날 장로교 교단들의 혼례절차와의 비교

오늘날 장로교에서의 결혼예식은 교단들마다 다소 절차가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등소이하다. 또 예배모범에 규정된 대로 따르기보다는 주례자마다 임의로 순서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흔하리라 본다. 장로교는 본래 한 교단이었지만 해방 이후 신학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급속하게 분열되

36 Alexander Albert Pieters, 『찬송가』, 1.

37 신소섭, 『예배와 찬송가』(서울: 아가페문화사, 1993), 26.

38 이윤형, 『개혁주의 찬송가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34.

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단들로 산재해있다. 본 항에서는 고신, 합동, 통합, 합정, 합신, 합동개혁, 기장 등 장로교 일곱 교단의 혼인예식 순서를 1924년과 1925년의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에 규정된 식순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은 개식부터 폐식까지 총 13단계의 절차로 편성되어 ① 개식 ② 찬송(혼례식) ③ 기도 ④ 식사(式辭) ⑤ 성경낭독 ⑥ 설명(설교, 문사의 내용) ⑦ 서약 ⑧ 신물(信物)증여 ⑨ 기도와 공고(公告) ⑩ 광고, 축전(祝電, 祝箋) 및 타사(他事) ⑪ 찬송(頌榮과 예배) ⑫ 축복 ⑬ 혼인증서 교환 및 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순서들에 준하여 고신, 합동, 통합, 합정, 합신, 합동개혁, 기장 등 장로교단들의 혼인절차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長老教會婚喪禮式書』(1924/1925)와 현재 장로교단들의 혼인예식 절차 비교

順	예식서 (1924/1925)	고신 ³⁹	합동 ⁴⁰	통합 ⁴¹	합정 ⁴²	합신 ⁴³	합동 개혁 ⁴⁴	기장 ⁴⁵
①	개식 (신랑신부입장)	○	○	○	○	○	○	○
②	찬송(혼례식)	○	○	○	○	○	○	○
③	기도	○	○	○	○	○	○	○
④	식사	○	○	○	○	○	○	○
⑤	성경낭독 (마19:3-6; 엡5:22-33)	창1:26-31 ; 마5:1-10 등	○	막10:6-9; 엡5:22-25 등	○	창2장; 엡5:28-33	○	창2:20-24 ; 막10:6-9 등
⑥	설교 (주례사)	○	○	○	○	○	○	○
	문사내용	-	개식에 포함	-	-	-	개식에 포함	-
⑦	서약 (5단계)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2단계 신랑/신부
⑧	신물증여 (5단계)	○ 단계구분 無	-	○ 단계구분 無	주례자 거침 2단계 이상	-	-	주례자 거침 2단계 이상
⑨	기도와 공고	○	○	○	○	○	○	○
⑩	광고/축전 등	○	○	○	○	○	○	○

⑪	찬송 (송영과 예배)	찬송	-	찬송(혹은 축가)	찬송	찬송(혹은 축하노래)	-	-
⑫	축복(축도)	○	○	○	○	○	○	○
⑬	증서교환/ 폐식	-	-	-	-	-	-	-
이외의 주요순서		·신랑신부 인사 (내빈/ 양가부모)	·신랑신부 인사 (내빈/ 양가부모) ·축가	·성찬(교회) ·신랑신부 인사 (내빈/ 양가부모) ·축가	·춧불점단 ·신랑신부 인사 (주례자/ 내빈/양가 부모)	·축가 ·신랑신부 인사 (양가부모/ 내빈)	·축가 ·신랑신부 인사 (양가부모/ 내빈)	·祝 (歌, 詩, 奏) ·신랑신부 인사 (양가부모/ 내빈)

오늘날 장로교 교단별 혼인예식 절차는 대체적으로 1924년과 1925년에 출판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대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완하거나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며 삭제된 항목도 있다.

첫째, 교회법상으로는 사회법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검증하는 과정으로 절차 상에 넣었던 문사는 현재 합동과 합동개혁 외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합동 측의 경우 1978년 초판 『표준예식서』에는 신랑신부 입장에 이어 ‘문사’라는 이름으로 순서가 마련되어 있고 “회중을 살피면서 잠시 간격을 둘 것”⁴⁶이라는 문구가 첨언되었다. 이후 1993년 개정판에서는 이 순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 3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전예규위원회 편, 『예전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9), 143-47(고신).
- 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개정판)』(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93), 107-09(합동). 문사의 경우 1978년 초판에는 신랑신부 입장에 이어 이 순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1993년 개정판에는 순서에서 삭제하고 개식에 문장으로만 포함시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78), 106(합동).
- 41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편, 『예배예식서(표준개정판)』(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363-66(통합).
- 42 표준예식서편찬위원회 편,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정, 2001), 119-23(합정).
- 43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출판부, 2005), 114-22(합신).
- 4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7), 118-21(합동개혁).
- 4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편, 『희년예배서』(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출판사, 2003), 465-72(기장).
- 4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78), 107(합동).

개식단계에 문장만 포함시켰다. 합동개혁 역시 이 문장만 개식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합동과 합동개혁 모두 1924년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 명시한 문구, “公言하실 事由가 잇거던 現場에서 말삼하시고”는 누락하고 있다.

둘째, 일반예식장에서 집행하는 경우 25분 안에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설교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설교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참고로, 기장 측의 1978년판부터 2002년판까지의 『예식서』에서는 성경본문을 봉독한 후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때가 많다.”⁴⁷라고 부연했을 정도이다.

셋째, 통합 측의 경우 일반 예식장이 아닌 교회 예배당에서 예식을 진행할 경우 성혼선포 직후 성찬예식을 집행할 것을 권장했으며 혼례식은 성례가 아니지만 성찬식의 분병과 분잔을 병행함으로써 혼례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진작시키고자 했다.

넷째, 축도 전 찬송은 집례자가 송영과 예배에 관한 찬송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선곡할 수 있으며 기장 측에서는 찬송 대신 공식적으로 축가, 축시(祝詩), 축주(祝奏) 등으로 대체하여 동료, 친지, 교인 등이 동참하여 혼인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다섯째,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서 권고한 윤곽을 유지하면서도 신랑신부 내빈과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순서, 신랑신부 행진 등을 공식적으로 식순에 추가하여 현대적 감각과 정황에 걸맞게 틀을 설정했다.

여섯째,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기술한 것처럼 폐식 직전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서서 혼인증서를 각자 1통씩 교환하는 순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증서는 예식이 끝난 후 신랑과 신부가 스스로 챙기거나 식장에서 전달해준다. 더군다나 이 증명서에는 주혼자와 행례자는 서명하지 않고 주례자만 단독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47 한국기독교장로회 편, 『예식서』(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출판사, 2001), 107(기장). 1978년부터 2002년판까지는 이 문장이 있으나 2003년 개정판 『희년예배서』에서는 삭제되었다.

IV. 나가는 말: 현재적 함의

지금까지 1924년과 1925년에 발행된 『長老教會婚喪禮式書』를 고찰하여 혼인예식을 분석해보았다. 예식절차는 개식, 찬송, 기도, 식사, 성경낭독, 설명(설교와 문사의 내용), 서약, 신물증여, 기도와 공고, 광고, 찬송, 축복(축도), 증서교환 및 폐식 등 모두 13단계로 편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으로서, 이 문헌에서는 혼인예식 자체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단계에서도 해당 교회와 주례자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주례목사는 미리 예비신랑신부의 집안 내력과 속사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혼례를 치른 후에는 교회에 혼인명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 없는 예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長老教會婚喪禮式書』에 규정한 혼례예식에 비추어 실천적 의미에서 현재적 함의를 다음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식을 갖기 전에 신랑신부가 주례목사를 찾아 최소한 2회 정도 상견례를 시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례목사가 단지 부모의 의사만을 경청하여 선뜻 신랑신부의 예식을 승낙함으로써 이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지 않은 채 집례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에 규정했듯이 주례자는 신랑신부의 나이를 고려하여 사리에 어긋난 조혼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압력에 의한 강제 결혼이 아닌지, 순결한 청년들인지, 결혼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랑신부 모두가 신자인지, 혹은 세례를 받았는지 신앙심을 확인하여 주 안에서 가약을 맺도록 해야 하며 법적 관련서류들도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김창인 목사는 『예식과 설교』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례교인증명서, 양가 결혼승낙서,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결혼예식 준비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교회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주례목사는 신랑신부와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 예식준비 및 식순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⁴⁸

48 김창인, 『예식과 설교』(서울: 충청교회출판부, 1987), 15-16, 35-36.

둘째, 예식 진행 초두 단계에 반드시 문사의 순서를 넣어 양가와 내빈을 대상으로 확인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장로교 교단별 예식서에 의하면 합동과 합동개혁 교단 외 고신, 통합, 합정, 합신, 기장 교단에서는 이 문사의 내용을 예식순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예식서에 문사 내용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예식을 거행할 때는 생략하는 경우마저 흔하다. 본래 이 문사는 박문찬, 박승봉 등 예식위원들이 아무 하자가 없는 성결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식 순서에 예식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삽입했던 것이며 신랑신부 양가와 내빈 모두가 흠 없는 혼인예식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동의하고 확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주례자는 혼전 순결, 동거, 임신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06년 여대생 286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문제를 분석한 동덕여대 이병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성은 개방되어야 하며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3.4%),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33.2%), 사랑한다고 해도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생각한다(48.5%)”라고 답변했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14.9%에 불과했다.⁴⁹ 후 주례를 맡고자 할 때 당사자들이 혼전 동거나 임신 등으로 인해 지적받을 만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지혜롭게 미리 혼인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약을 행할 때 현재의 단순화된 단계를 보완하여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는 신랑과 신부 양자가 고백의 의미를 담는 의미심장한 카이로스(καιρός)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마음속에 혼례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각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주례자가 신랑에게’, ‘주례자가 신부에게’ 질문하고 서약을 받는 2단계의 축약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례이지만

49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研究』 제12권(2006), 126.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에서는 <주례자가 신랑신부에게, 주례자가 신랑에게, 주례자가 신부에게>라는 절차를 밟은 후 계속해서 신랑신부의 이름을 직접 면전에서 호명하여 <주례자가 신랑에게, 주례자가 신부에게> 거듭 질문하여 5단계에 걸쳐 서약하게 함으로써 부부지도(夫婦之道)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다섯째, 『長老教會婚喪禮式書』의 혼례예식에서는 폐식 직전에 주혼자, 행례자, 주례자가 일괄 서명한 혼인증서를 교부하는 순서를 넣었지만 오늘날 혼례에서는 이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더군다나 증서에는 서명란이 통상 주례자 한 사람만 날인할 수 있도록 인쇄되어 있다. 신랑신부가 나란히 서서 각자 한 통씩 받거나 혹은 두 사람이 한 통을 공유하도록 양가와 내빈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주례목사가 손수 전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와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뜻깊은 증표가 될 수 있고, 적시에 혼인의 상징성을 한층 고무시켜주는 귀감이 되리라 본다.

여섯째, 예식을 일반예식장보다는 가급적 교회당에서 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당에서 시행할 때는 시간을 여유 있게 안배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축하해줄 수 있으며 주례목사는 신랑신부에게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예식장에서 치를 경우에는 교인들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줄고, 모든 식순을 25분 이내에 서둘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설교(주례사) 시간은 기껏해야 5분 내지 6분 정도만 할애할 수 있다. 그 결과 메시지가 빈약하고 심지어 설교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마저 있어 기독교 예식으로서의 품위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기장 측의 『예식서』(1978년부터 2002년판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봉독 후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때가 많다.”는 권고도 이러한 교육지책(苦肉之策)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일곱째, 예식 주례는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 제1장 들어가는 말에서 전술했듯이 오늘날 혼례예식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또래의 동료 혹은 선배가 사회를 맡아 예식을 주관할 뿐 주례목사조차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며, 세속적 축제방식이 어우러진 자유분방한

예식으로 변질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럴 경우 해 교회 목회자는 단지 하객으로 참여하여 축하해주거나 예식 초반에 기도 혹은 중반에 축도를 맡는 소임으로 만족해야 한다. 기독교 예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축가나 특별순서 형태로 마련된 단계에서 은밀하게 세속적 요소들이 틈새 침투하여 혼인예식의 경건성을 해치는 행태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長老教會婚喪禮式書』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세기 전에 마련된 장로교단의 예식 지침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복음의 가치와 보수성, 경건성, 코람 데오(coram Deo)의 신앙심 고취, 하나님 앞에서와 증인들 앞에서 성스러운 고백을 담아낸 귀한 문헌이다. 본 연구자가 이 예식서에 비추어 제시한 일곱 가지 함의를 살선하여 식순에 적용한다면 오늘날 결혼예식에서 과거 초기 한국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원시적이며 원형적인 거룩성을 회복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alvin, Joh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Genesis(I)*,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 Clark, Charles A. ed.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2.
- Hedlund, Roger E.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A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1.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 Ogburn, William Fielding.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New York: Viking Press, 1950.
- Pieters, Alexander Albert. 『찬송가』.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
- Rauschenbusch, W. 『耶蘇의 社會訓』 고영환 역.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0.
- Soltau, Theodore S. 『신자생활의 첩경』.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6.
- Stalker, James. 『그리스도윤리표준』 김필수, 오천영, 윌리엄 클락 역.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9.
- _____. 『그리스도모범』 김필수, 오천영, 윌리엄 역.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9.
- Swallen, William L. 『도덕학』. 조선예수교장로회, 1915.
-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념논문집』 제30권 1호(2005), 219-245.
- 김병희. “초기 한국 장로교 대구·경북지방 조사의 역할과 활동”. 『역사신학논총』 제36권(2020), 177-222.
- 길선주. 『講臺寶鑑』. 平壤: 東明書館, 1926.
- 김영기 편. 『역사 속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서울: 북코리아, 2005.
- 김재갑 편.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합정.
- 김창인. 『예식과 설교』. 서울: 충현교회출판부, 1987.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고

- 신총회출판국, 2018. 고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2. 합동.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78. 합동.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7. 합동개혁.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93. 합동.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전예규위원회 편. 『예전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9. 고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통합.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출판부, 2005. 합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86.
- 박영규. 『朝鮮王朝實錄』.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박윤선.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서울: 영음사, 1974.
- 박태영. “기독교인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제12권(2004), 77-109.
- 손삼권. “현대 사회의 결혼관 경향과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제19권(2008), 221-247.
- 신소섭. 『예배와 찬송가』.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3.
-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2019), 153-187.
- 오윤선. “결혼 준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연구”.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194-221.
- 이길표. 『전통가례』.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 이덕수 외 4인. 『경락미용과 한방』. 서울: 광문각, 2005.
-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研究』 제12권

(2006), 105-137.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아시아문화 연구』 제28권(2012), 151-184.

이윤형. 『개혁주의 찬송가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이장형.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 성남: 북코리아, 2016.

이정관.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 『신학과 실천』 제47권(2015), 401-426.

임혜경 외 2인. 『매너와 서비스』. 서울: 새로운사람들, 2003.

朝鮮예수教長老會. 『長老教會婚喪禮式書』. 1924.

_____. 『長老教會婚喪禮式書』. 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5.

조용훈.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제22권(2011), 303-330.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편. 『예배-예식서(표준개정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통합.

총회헌법위원회 편.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합동개혁.

표준예식서편찬위원회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정, 2001. 합정

한국기독교장로회 편. 『예식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출판사, 2001.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편.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1.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편. 『희년예배서』.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출판사, 2003. 기장.

한규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0권(1999), 67-101.

한치진. 『基督教人生觀』. 京城: 철학연구사, 1934.

[Abstract]

A Study on Marriage Culture and Its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Forms of Marriage and Burial*(1924/1925)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wedding worship service from *Forms of Marriage and Burial* published by the Choseon Presbyterian Church in 1924 and 1925 in order to explore the cultural aspects of wedding ceremony from Korean Churches at the time.

Firstly, this literature put an emphasis on: God's human creation, strict monogamous marriage, Adam's original sin and the punishment of death, the substitutiona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 sincere promise of salvation and futuristic hope.

Secondly, this ritual's ordinances clarified that wedding ceremony should be part of a biblical Christian ceremony from the view of Reformed Theology.

Thirdly, the wedding garment put into a sufficient consideration the Korean afferents in level with indigenization. The literature had put into regard the adiaphora issue promoting the practical convenience of wedding ceremony.

Fourthly, the wedding worship service was arranged in 13 stages on the basis of biblical principles such as opening(groom march & bride march), hymn(wedding), prayer, opening ceremony, scripture reading, explanation(sermon and question to the guests), vows, exchange of rings, prayer and declaration of marriage, advertisement, hymn(doxology and worship), benediction, certificate exchange and closing, and so on.

Fifth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biblical Christian wedding worship service, there are important assignments accumulated that we need to work 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ssons in *Forms of Marriage and Burial* such as advance review of legal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plenty of time for sermon, prudent question to the guests, repeated vows of the bride and groom, certificate exchange, and so forth.

Key Words: *Forms of Marriage and Burial*, wedding ceremony, the Bride and Groom, Marriage Certific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Directory of Worship*